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69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신영대·이훈기·김정호

허종식 · 임광현 · 김기표

정일영 · 전재수 · 황명선

정을호ㆍ허 영ㆍ윤준병

박홍배 · 김윤덕 · 박희승

추미애 · 정태호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 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 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부 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로, "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금액과 제7호"를 "금액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2 호 및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 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도서등사용분 및 영유아놀이시 설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 분·대중교통이용분 및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 호(종전의 제5호)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 영유아놀이 시설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다목1) 중 "직불카 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으로.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으로 하 며, 같은 목 2)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 100분의 30"으로,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경우에는 300만원"을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 을 한도로 한다"를 "4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영유아용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놀이및 교육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	
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	<u>2</u>
<u>025년 12월 31일</u> 까지 재화나	026년 12월 31일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	
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	
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	
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3.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2
<u>제1호부터 제6호</u>
제2호 및 제
<u>4호부터 제6호까지</u>
<u> </u>
<u>금액과 제8호</u>
<u>제1호부터 제</u>
<u>4호까지</u>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
이놀이시설 등 영유아용 놀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

-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 0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놀이 및
	교육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u>.</u>	
	<u>대중교통이용</u>
	분・도서등사용분 및 영유아
	<u>놀이시설사용분</u>
	<u>전통시장사용</u>
	분·대중교통이용분 및 영유
	아놀이시설사용분
<u>).</u>	
	<u>대중</u>
	교통이용분, 영유아놀이시설
	<u>사용분</u>

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도서등사용 분) × 100분의 30 + (최 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

<u>7.</u>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
	직불카드
	등사용분 + 도서등사용
	분 + 영유아놀이시설사
	<u> </u>

<u>용분 - 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 분 × 100분의 15 + <u>직불</u> 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u>30</u>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 의 40

7. (생략)

③ ~ ⑨ (생 략)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등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
 당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u>직불카드등</u>
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영유아놀이시설사용
<u>번</u>
2)
<u>(</u> 직불
카드등사용분 + 영유아
<u> 놀이시설사용분) × 100</u>
분의 30
<u>신용카드사용분 -</u>
직불카드등사용분 - 영
유아놀이시설사용분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10
<u>300만원</u>
<u>경우에는 400만</u>
<u>원</u>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	
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1
의 합계액(연간 <u>200만원</u> 을	<u>300</u> 만원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u>400만원을 한도로 한다</u> -
2. <u>제7호</u> 의 금액(연간 100만원	2. <u>제8호</u>
으 하도로 하다)	